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842

2020년 9월 15일
보건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 및 제출자** : 2020년 8월 12일 김경우 의원 발의

2. **회부일자** : 2020년 8월 21일

3. **상정일자** : 제296회 폐회중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0년 09월 04일 상정· 의결(원안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김경우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 특히 2020년 1월 29일 「환자안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둘 수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(이하 “전담인력”이라 한다)의 자격

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함(안 제5조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환자안전법」, 「환자안전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○ 「환자안전법」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으로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○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‘환자안전 전담인력’을 둘 수 있도록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환자의 보호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제5조(환자의 보호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

	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

나. 검토의견

○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제1항[1]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‘환자안전 전담인력’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
- 또한, 관련 법 시행규칙 제9조[2]에 따라 병원의 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각 병원별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아래와 같이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
---

1) 제12조(전담인력)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(이하 "전담인력"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
1.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.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

2) 「환자안전법 시행규칙」 제9조(전담인력)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"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. 다만,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.
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3년을 말한다.
③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(종합병원은 제외한다): 1명 이상
2.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: 1명 이상
3.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: 2명 이상

〈서울특별시 시립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현황〉

(2020.7.29.현재)

연번	병원명	병상수	전담인력배치 여부	전담인력 현황
1	서남병원	330	배치(19.04.01.) 배치(19.09.07.)	간호사2명
2	북부병원	200	배치(17. 6. 20.)	간호사 1명
3	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	761	배치완료(17.12.01 / 19.05.07 / 19.10.01)	간호사 3명
4	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	653	배치(① 17.3.2,② 17.3.16,③ 20.2.21)	간호사 3명
5	백암정신병원	251	배치(2017. 3. 15.)	간호사 1명
6	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	299	배치 (17. 9. 1)	간호사 1명
7	축령정신병원	264	배치예정(20.8.1.)	간호사 1명 (채용 예정)
8	서울특별시 동부병원	201	배치(19. 10. 16.)	간호사 1명
9	장애인치과병원	외래	해당없음	

○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‘환자의 보호 등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, 환자의 보호를 위해 병실 등의 출입 제한, 병실환경 및 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음.

-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제3항[3]에서 명시하고 있는 ‘전담인력’의 업무인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관리·공유,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등과 같은 업무내용으로 보아 ‘환자안전 전담인력’의 배치에 관한 조문을 현행안 제5조에 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.

○ 또한, 상위법인 「환자안전법」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, 약사, 간호사 및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문화하고, 전담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 의약품 처방·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추가하고 있음.

- 상위법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됨으로써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집행부 의견

○ 서울특별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

○ 2020년 1월 29일 「환자안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둘 수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(이하 “전담인력”이라 한다)의 자격기준이 변동

---

3) 제12조(전담인력) 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관리·공유
2.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
3.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

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으로 개정안에 동의함.

3 종합의견

○ 「환자안전법」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으로,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병원에 해당되는 시립병원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자 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42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발 의 자 : 김경우 의원(1명)
찬 성 자 : 고병국, 권영희, 김기덕, 김화숙, 오현정, 유 용, 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 이호대, 임종국, 전석기, 정지권, 정진술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 특히 2020년 1월 29일 「환자안전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둘 수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(이하 “전담인력”이라 한다)의 자격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

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함(안 제5조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환자안전법」, 「환자안전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환자의 보호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제5조(환자의 보호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「환자안전법」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